

의안번호	2216529
의 퇴 인	장종태 의원
회 답 일	2026. 5. 28.
추 계 번호	26C0629

감염성간염 관리에 관한 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(일부추계) 제정안에 따라 감염성간염관리 기본계획 수립 및 감염성간염관리위원회 구성·운영 등을 실시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1억 1,900만원(연평균 2,380만원) 이상으로 추계됨

[표 1]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7~2031년

(단위: 백만원)

구 분	2027	2028	2029	2030	2031	합계	연평균
감염성간염관리 기본계획 수립·시행 (안 제5조·제6조)	110	—	—	—	—	110	22
감염성간염관리위원회 구성 (안 제8조·제9조)	1.8	1.8	1.8	1.8	1.8	9	1.8
합계	111.8	1.8	1.8	1.8	1.8	119	23.8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5조 (감염성간염관리 기본계획)	○ (제1항) 질병관리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감염성간염관리에 관한 기본계획(이하 "기본계획")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.	의무규정
2	안 제6조 (연도별 시행계획)	○ (제1항) 질병관리청장,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(이하 "시행계획"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	의무규정
3	안 제8조 (감염성간염관리위원회)	○ (제1항) 질병관리청장 소속으로 감염성간염관리위원회(이하 "위원회")를 둔다.	의무규정
4	안 제9조 (위원회의 구성)	○ (제1항)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	의무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5	안 제10조 (감염성간염연구사업)	○ 질병관리청장은 감염성간염의 예방, 진단 및 치료 기술의 발전과 치료 의약품의 개발 등을 위한 감염성간염 연구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.	재량규정
6	안 제11조 (감염성간염예방사업)	○ 질병관리청장,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감염성간염 예방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.	재량규정
7	안 제12조 (감염성간염조사통계사업)	○ (제1항) 질병관리청장은 감염성간염 발생 위험요인과 감염성간염의 발생 및 치료에 관한 자료 통계 산출을 위한 조사·통계사업(이하 “조사통계사업”)을 시행할 수 있다.	재량규정
8	안 제13조 (의료비 지원 사업)	○ (제1항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감염성간염의 예방, 진단 및 치료에 드는 비용을 예산 또는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.	재량규정
9	안 제16조 (국제협력)	○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 등과의 협력을 통하여 감염성간염관리에 관한 정보를 교류하고, 감염성간염 퇴치를 위한 국제적인 노력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.	의무규정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안 제5조 (감염성간염관리 기본계획)	○	
2	안 제6조 (연도별 시행계획)		
3	안 제8조 (감염성간염관리위원회)		
4	안 제9조 (위원회의 구성)		
5	안 제10조 (감염성간염연구사업)	×	○ 관련 사업 실시 중
6	안 제11조 (감염성간염예방사업)		
7	안 제12조 (감염성간염조사통계사업)		
8	안 제13조 (의료비 지원 사업)		
9	안 제16조 (국제협력)		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현행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제정안 일부 조항 관련 사업이 시행 중이고, 제정안에 따라 사업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나 현 상황에서 확대될 사업의 내용 및 범위 등을 알 수 없으므로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
 - 제정안 재정수반요인과 관련된 사업의 예산현황은 다음과 같음

[표 2] 현행 사업과 제정안 재정수반요인 비교

사업명	구분		2026년 예산안	재정수반요인
감염병예방 관리 및 지원	바이러스 간염 관리	바이러스간염 조사감시체계 운영	80백만원	안 제10조 (감염성간염연구사업) 안 제11조 (감염성간염예방사업)
		바이러스 간염 검진 및 사후관리	250백만원	안 제13조 (의료비 지원 사업)
	감염병 실태조사		150백만원	안 제12조 (감염성간염조사통계사업)
만성감염질환 코호트 사업	B형간염코호트운영		255백만원	
	C형간염코호트운영		340백만원	
	코호트 자료관리*		58백만원	
감염병예방 관리 및 지원	상시감염병 퇴치·박멸 인증 및 관리	WHO 퇴치 목표 달성을 위한 인증 관리 평가	30백만원	안 제16조 (국제협력)
		국제기구 목표 이행을 위한 운영비	20백만원 (바이러스간염 성과지표개선 및 모니터링체계 개발)	

주: 에이즈, B형간염, C형간염, 결핵 코호트 전체 자료 관리(자료정제 표준화 및 DB 시스템 기능개선)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- 본 추계에서는 안 제5조·제6조·제8조·제9조의 재정수반요인을 대상으로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추계
 - (감염성간염관리 기본계획의 수립) 제정안에 따라 법정 기본계획 마련 시, 추가재정소요는 질병관리청 유사 연구용역 사례를 적용하여 추계
 - － 「제1차 바이러스 간염(B형·C형) 관리 기본계획(2023~2027)」 수립 당시, 질병관리청은 별도 예산 편성 없이 각 부서 담당자가 수립한 세부 계획을 취합하여 마련하였음

- 이후 계획의 추진·안정적인 성과지표 산출·모니터링 체계 마련 등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였음¹⁾
 - 질병관리청은 「제2차 바이러스 감염 관리 기본계획(2028~2032)」을 수립할 예정이며 제정안에 따라 이 계획이 법정 기본계획이 될 경우, 사전 연구용역 수행을 통한 체계적 계획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²⁾
 - 따라서 본 추계에서는 '23년 3월 「제1차 바이러스 감염(B형·C형) 관리 기본계획(2023~2027)」 수립·발표 후 사후적으로 수행된 연구용역비 1억 1,000만원을 적용하여 법정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함
- (감염성간염관리위원회 구성) 질병관리청 유사사례인 감염병관리위원회 운영 사례와 기획예산처 「2026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」³⁾을 준용하여 추계
-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감염병관리위원회는 '24년과 '25년에 각 3회의 회의를 개최하였고, 대면회의 시 회당 15만원, 서면회의 시 회당 10만원을 수당으로 지급함⁴⁾
 - 회의참석수당 이외 회의비, 인쇄비, 회의실 임차료 등의 운영비는 별도로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
- 제정안 부칙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으로 함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- 감염성간염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(안 제5조·제6조)
- 추계 기간 중 수립될 기본계획은 「제2차 바이러스 감염 관리 기본계획(2028~2032)」으로, 추가재정소요는 계획 기간 전인 '27년 수행될 연구용역비로 가정
 - 추계결과, 5년 주기로 감염성간염관리 기본계획을 수립·시행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1억 1,000만원으로 추계

1) 바이러스 감염(B형·C형) 관리 기본계획 성과지표 및 감시체계 개선방안 연구('23년 일반연구비 110백만원 편성)
 2) 연구용역의 내용은 정책 현황 분석, 통계자료 분석, 국내외 정책 사례 조사, 전략 및 세부과제 설계 등으로 구성될 예정
 3) 「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」(기획예산처) - 법령 등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1일당 200,000원내(서면심사 150,000원내)에서 지급하되, 참석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1일 1회에 한하여 100,000원내에서 추가 지급할 수 있으며, 원격지에서 참석하는 경우에는 교통비·식비·숙박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(220목) 또는 일반수용비(210-01목)로 추가 지급할 수 있다.
 4) 2024년 대면회의 1회, 서면회의 2회, 2025년 대면회의 2회, 서면회의 1회 개최

[표 3] 감염성간염관리 기본계획 수립·시행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7~2031년

(단위: 백만원)							
구 분	2027	2028	2029	2030	2031	합계	연평균
감염성간염관리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·시행 (안 제5조·제6조)	110	-	-	-	-	110	22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□ 감염성간염관리위원회 구성 (안 제8조·제9조)

-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질병관리청에 감염성간염관리위원회를 설치·운영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으로 위원 수, 회의 횟수, 회의수당 단가의 곱으로 추계
 - (위원 수) 위원장(질병관리청장)을 포함하여 법안에 따른 최대 정수인 10명으로 가정하고, 이 중 수당 지급 대상인 민간위원 수는 3명으로 가정
 - (회의 횟수) 감염병관리위원회 운영 현황을 고려하여 연 3회 개최하는 것으로 가정
 - (회의수당 단가) 감염병관리위원회 대면회의 회당 수당과 기획예산처 「2026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」을 준용하여 회당 20만원을 지급하고, 수당 단가는 추계 기간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
- 추계결과, 감염성간염관리위원회를 구성·운영할 경우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900만원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추계됨

[표 4] 감염성간염관리위원회 운영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7~2031년

구 분	2027	2028	2029	2030	2031	합계	연평균
민간위원 수(명, A)	3	3	3	3	3	-	-
회의 횟수(회, B)	3	3	3	3	3	-	-
회의수당 단가(백만원, C)	0.2	0.2	0.2	0.2	0.2	-	-
추가재정소요(백만원, A×B×C)	1.8	1.8	1.8	1.8	1.8	9	1.8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V. 부대의견

- 본 추계는 유사사례를 적용하여 추계한 결과로,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
- 본 추계는 추계가 가능한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으로,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

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의산정책처	분석관	과장(직무대리)
사회비용추계과	이소임	이제정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이소임	02-6788-4742	soimlee@assembly.go.kr